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식품위생법」 일부개정법률(제17809호) 개정·공포 알림

-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·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유주방의 영업 및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, 집단급식소에서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식품위생법」 일부개정법률(제17809호)이 2020.12.29. 개정·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해당 개정법률은 2020.12.29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(제17809호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, 6개 지방청장(52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1개 전부서), 본부(52개 전부서), 관련협회 및 단체

주무관	제권모	사무관	최규호	식품안전정책 과장	2020.12.29. 김용재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14415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016 팩스번호 043-719-2000 / beliebt81@korea.kr / 대국민 공개